

대기오염물질 관리 규정

문서관리번호	DS-대기-221201
담당자(부서)	임종만(정보사업부)

주식회사 다솜에스앤씨

제정 및 개정 이력

일자	사유
2022.12.01	최초 제정
2024.09.18	환경관리인 자격요건 수정

(시행일) 본 지침은 등록된 제정 및 개정 일자 이후 즉시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다솜에스앤씨(이하 회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생산능률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이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별표 4)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소배기장치”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후드, 덕트, 방지시설, 배풍기 및 배출구(굴뚝)를 설치하여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후드”란 유해물질을 포집, 제거하기 위해 해당 발생원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국소배기장치의 개구부를 말한다.
5. “제어풍속”이란 후드 전면 또는 후드 개구면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당해 후드로 흡입시킴으로써 그 지점의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속도를 말한다. 다만, 포위식 및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 흡입되는 기류의 풍속을 말하며, 외부식 및 레시버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유해물질 발생원 또는 작업위치에서 후드 쪽으로 흡입되는 기류의 속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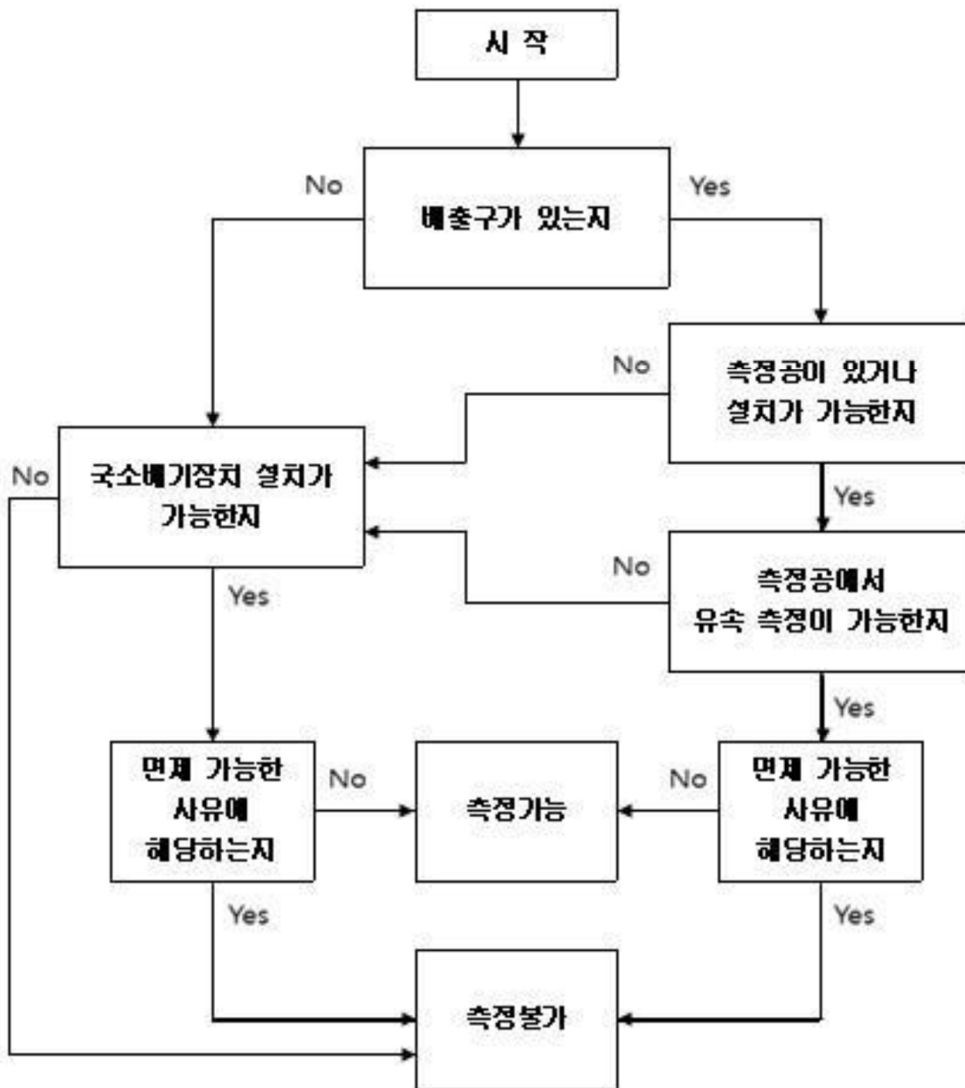
제 2 장 자가측정

제 4 조(자가측정) 회사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한다.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에 따른다.

제 5 조(자가측정) ① 자가측정 여부는 다음의 판단절차를 따른다.

② 자가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매년 하반기 1 회 실시한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여부 검토]



제 3 장 환경기술인 임명

제 6 조(환경기술인 임명) 회사는 동 규정 제 4 조 1 항에 따라 자가측정이 필요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하는 환경기술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별표 1 참고).

- ①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 1 인 이상을 임명한다.
- ②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대기환경산업기사 1 인이상, 환경기능사 또는 3 년 이상 대기환경 분야 관련업무 종사자 1 인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한다.
- ③ 공동방지시설 이용 시 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5 중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될 경우 3 중 사업장에 준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다.

- ④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수질환경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소음·진동환경기술인 겸임이 가능하다.

[별표 1] 사업장 분류에 따른 환경관리인 자격요건

종별	구 분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및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관련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를 통한 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을 통한 방법)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 = 24시간 또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